2026 북일여자고등학교 학생 출결 처리 지침

***원격수업(온라인수업) 기간도 기본적으로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출석 인정(공결) 처리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유행성 결막염 등)**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시행 2025.9.8.)

구분	1급 (18종)	2급 (21종)	3급 (28종)	4급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러. 니파바이라스감염증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더. 장관감염증 러. 급성호흡기감염증 머.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분류: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
- 출처: 「학교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3차 개정판(2024.1.5.) 교육부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독감(코로나19)이 의심되어 병원에 다녀온 경우, 확진이 아니더라도 검사결과서, 의사 의견서로 당일 공결 처리
-독감(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일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의사 의견서로도 확진일을 포함하여 최대 3일간 공결 처리함. 단, **시험 기간**의 경우, 확진 검사일 당일만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결로 처리하며, 진단서나 의사 의견서 상 격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기간만 공결 처리함.
-추후, 감염병 유행 상황이 변화할 경우, 상위 출결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2023.8.31.)되어 독감과 동일하게 처리함.)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가능. 별도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됨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4)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결석: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 **생리결석** : 월 1회 출석 인정
-결석신고서(보호자의 확인 및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의 문구를 기입)로 공결 처리함.
단, **시험기간** 의 경우, 결석신고서(보호자의 확인 및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의 문구를 기입)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공결로 처리함.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도 월 1회로 간주하여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여 인정함. 단, 조퇴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께 문자 발송, 반복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확인함.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청 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11) 그 밖에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 경우

나. 질병 결석 처리

(1) 결석일을 포함한 출석일 기준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의

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교감 전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최종 결석일 포함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6)의 경우,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함. (단, 결석 신고서는 계속 제출해야 함.)

다. 미인정결석 처리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라. 기타 결석 처리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공직선거법」및「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지각、조퇴、결과 처리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20)과 하교시각(16:20)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교과교사가 담임에게 전달하여 결과 상황을 전달, 확인함.

가) 수업시간에 10분 초과 불참한 경우

나) 교과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20분을 초과하여 불참한 경우

(단, *학생은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 학생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조치 (입퇴실 시간 기록, 핸드폰 교실 보관 등)를 따르며,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 시 교사는 불허할 수 있음.)

다) 위의 가),나)항은 지켜졌더라도, 수업 시간 중 교실을 이탈한 학생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 사안(흡연, 학교 폭력 등)이 있을 경우, 무단 결과로 처리함.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 질병, 기타의 순으로 처리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은 수업 결손이 많은 경우로 입력하여 처리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바. 특기사항 기록

(1)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② 질병•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연속 5일 이상 결석 시 사유를 기재함

※다만, 질병결석 사유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③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5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시 사유를 기재함.

④ 출석인정 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2)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입력 불가능 내용의 예: 해외봉사활동, 해외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3)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을 입력함.

(4)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시유를 입력할 수 있다.

(5) 출석 인정 결석의 출석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고등학교)」을 따른다.**

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길라잡이

(1) 개념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2)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대통령령 제35856호,2025.11.2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555호, 2026.2.12.) 해설 및 기재요령

(3) 기본 원칙 :

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가능

②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되,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

③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 확인 철저

④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보호자가 수업일 기준으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일을 포함하여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과 보고서 제출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⑤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이용 가능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 자녀지원 - 교육활동 신청 - 교외체험학습신청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⑥ 개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함

⑦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개인체험학습 가능 기간(연간 최대 15일)을 초과한 경우
- 개인체험학습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교외체험학습 기간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기본 원칙(연간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가능

② 학기 시작일 포함 수업일 기준 5일간, **2월 학년말 방학 개시 직전 수업일 기준 5일간 (출석일이 5일 미만인 경우는 모든 출석일)**, 정기고사 기간, 고사 후 이의제기 및 성적 확인 기간(고사 종료 후 수업 첫날부터 수업일 기준 5일간, 단, 공휴일 등으로 5일 이내 특정 요일 수업이 없을 경우 특정 요일을 포함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함.), 원격수업(온라인 수업)기간, 기타 학교장이 특정한 기간 중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음.

③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등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산정에서 제외

④ 교외체험학습은 1일 전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시 반일 단위로 운영 가능

*공강 시간 등 날짜별 오전 오후 수업 시수의 배정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형평을 위해 반일 단위를 8:20~12:20까지 '오전', 12:20~16:20까지 '오후'로 정하여 그 시간 동안의 수업시수만큼(2~4시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할 수 있는 **가정학습** 사유 시, **반일 단위 사용 불가**

(5) 교외체험학습 내용

체험학습	·가족 행사 참여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등
가정학습	·가정학습: 별도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 -코로나19 관련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시 한시적 허용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6 충남 중등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따른다.**

◈ 제출 서류 및 처리 과정

1. 제출 서류

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완료,
학급 담임이 보호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함.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일을 포함한 수업일 기준 5일 이내 제출

나. 결석(출석인정결석(생리결,공결,경조사결 등), 질병결, 기타결석 등)

-결석신고서 : (증빙 자료와 함께) 사전 혹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출석일 기준 5일 이내 제출

2. 처리 과정

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학생의 사전 신청,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후에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 : 학생이 근거자료와 함께 사후 제출

☞사후에 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묶어 월별로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나. 결석신고서(출석인정결석(생리결,공결,경조사결 등), 질병결, 기타결석 등)

☞사후에 월별로 결재{☞담임-부장(학년부장)-교감[전결]}

다. 학급 담임교사는 매달 출결 서류를 수합, 정리하여 학생 확인 서명 후 내부결재화

라. 매달 NEIS '월 출결마감' 후 출결서류는 학년에서 수합하여 보관하고, 학기말에 교무운영부로 모두 이관.
단, 질병조퇴, 질병지각, 질병결과 서류는 담임교사가 자체 처리

3. 온라인(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신청 및 처리 : 학생 결석 신고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24.9.23부터 시행)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학부모 서비스-'자녀지원'-'교육활동신청'-결석신고서/교외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① 신청서 :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최소 3일 전 신청, 기간/장소(구체적인 '지자체명'까지 기입)/인솔자(성인)/체험학습 계획(요약식 혹은 서술식)을 반드시 입력

② 보고서 : 체험학습 (마지막)해당일을 포함하여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안에 신청, 기간/장소/체험학습 내용(무엇을, 어떻게, 소감 등)/증빙자료(사진:인솔자와 학생임을 인식 가능한 동반 사진, 입장권, 결과물 등) 첨부하며, 외국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반드시 제출함.

③ 온라인 신청(사전 신청)시 보고서 제출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나. 결석 신고

① 질병 결석, 기타 결석 : 증빙 자료 첨부와 함께 수업일 기준으로 사후 5일 이내 제출
(병결의 경우 진단서, 의견서, 처방전,약봉투 등 입증 가능 자료,
/단, 고사 기간은 의사 진단서나 의견서 제출시에만 인정함.)

② 출석 인정 허가 : 생리결, 공결/경조사결
(입증 가능 자료 첨부와 함께 (마지막)해당일을 포함하여 수업일 기준으로 5일안에 제출.
단, 생리결(월1회)의 경우에는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의 문구를 기입함)

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종이 서류의 별도 제출을 하지 않음

라. 상신 및 승인 단계 : 담임-학년부장-교감(전결)

◈ 본교의 학생 지각 처리

1. 학생의 지각 처리 시점(기준) : 교실 도착(08시 20분 이후)
2. 지각 처리 내용
 1) 미인정 지각 : 고의, 태만, 늦잠, 개인의 부주의, 학원 수강,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2) 질병 지각 : 질병에 따른 지각
 3) 기타 지각 :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② 기타 합당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 (☞'기타 지각' 처리)
 1) 천재지변, 계획.예정에 없는 행사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2) 교통수단(버스, 전철, 통학버스 등)의 고장이나 연착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3) 단, 개인 승용차 등교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처리함.
4. 기타 합의가 안 되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학년별로 학년부장이 사안을 모두 수합한다.
 2) 관련 소위원회(교감,교무운영부장,학년부장)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한 후 처리 방침을 정한다.
 3) 방침이 정해지면 사안에 대해 모두가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부칙 (2026.3.)

이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한다.

[양식1]

결석 신고서

결재	담임	학년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결석신고 구분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함	질병결석	( )	
		인정결석	( )	
		미인정결석	( )	
		기타결석	( )	
결석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일간)			
결석사유				
보호자명		관계	부모( ), 기타( )	연락처

본인은 상기와 같이 결석하(겠,였)으므로 보호자 연서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학 생 ㊞

보호자 ㊞

202 년 월 일

첨부 :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생리결석의 경우, 결석사유에 '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의 내용 기재

[양식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재	담임	학년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기간	1일 단위	신청 기간(보호자)	202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반일 단위	반일 기준	오전	8:20~12:20 (해당 시간 수업)	
			오후	12:20~16:20 (해당 시간 수업)	
		신청 시간(보호자)	당일 총수업시수 ( )시간	2026년 월 일 ( )교시~( )교시/( )시간 신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여부 (필요 시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O , X)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 ), 기타 체험활동( )				
목적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관계		연락처	
교외체험 학습계획					
확인 사항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연속하여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 시키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 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며, 위와 같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유의 사항

1. 목적 및 학습계획(일정, 장소,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참가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제출 및 승인
2.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를 연락(전화, 문자, 문서) 받은 후 실시
3.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즉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4. **보고서 제출 기한: 허가한 기간 종료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

[양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결재	담임	학년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기간	1일 단위	신청 기간(보호자)	202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인정 기간(담임교사)	202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반일 단위	반일 기준	오전	8:20~12:20 (해당 시간 수업)	
			오후	12:20~16:20 (해당 시간 수업)	
		신청 시간(보호자)	당일 총수업시수	20 년 월 일 ( )교시~( )교시/( )시간 신청	
		인정 기간(담임교사)	( )시간	20 년 월 일 ( )교시~( )교시/( )시간 신청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 ), 기타 체험활동( )				
목적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관계		연락처	

어디에서

장소	▸

무엇을, 어떻게, 소감

무엇을	
어떻게	각 일정별로 구체적인 체험 내용, 배운 점 등을 자유롭게 기록
증빙 자료	사진 등 증빙 자료, 국외 시 날짜 증빙 가능한 선박표, 비행기 티켓 사본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보고서 작성 유의 사항: 1.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추가 작성
2. 사진, 입장권, 참가확인서, 학습 결과물 등 학교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첨부
3. 제출 기한: 허가한 기간 종료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별지)

학년/반	학년 반 번	성 명	

[양식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학 생	학년 반 번	**성 명**		**휴대 전화**	
보 호 자	(관계)	**성 명**		**휴대 전화**	
기 간	202 년 월 일 : 00 ~ 월 일 : 00 , ( )일 ( )시간				
목 적 지	(구체적으로 작성)		**숙박 장소**		
대리인솔 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				
인 솔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비상 연락 (항목) 인솔자 성명, 연락처, 주소			동의 여부	(○ ,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위 대리인에게 인솔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호자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자 서약서

본인은 귀교에 재학 중인 위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자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위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대리 인솔자(보호자)로 그 책임을 위임받아 교외체험학습이 본래 목적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에 책임질 것이며, 만일 허가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리 인솔자 : (인)

북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양식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성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승인 여부	승 인		미승인	
	미승인 사유			
학습형태	가족행사 참여( ),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가정학습( ), 기타 체험활동( )			
기 간	202 년 월 일 :00 ~ 월 일 : 00 , ( )일 ( )시간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북일여자고등학교장(직인 생략)

※ 유의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미제출시 신청 기간 전체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신청 내용과 활동 내용이 다른 경우 신청 기간 전체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필요시 증빙자료는 체험학습 보고서 뒷면에 부착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연락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